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공공구매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구매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우선 지정하고, 구매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공공구매가 지역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를 정함.

나.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지역생산품의 생산·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

라. 지역생산품의 생산시설, 제품 및 공급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구매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정책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조문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

① 이 조에서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이 구매목적, 품질, 가격, 납품기한 및 공급 가능 물량 등 필요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 ① 이 조에서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이 구매목적, 품질, 가격, 납품기한 및 공급 가능 물량 등 필요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조문번호는 의회사무처의 현행 조문체계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참고] 서울특별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조례 비교

구분	주요 제도	세종 개정안 반영사항
서울특별시	서울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지역생산물 우선지정의 직접적인 선행 입법례
서울 성북구	관내 생산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대상 지정, 구매실적 관리, 생산·유통·판매지원, 학교·공공단체 구매협조	우선구매+판로지원+실적관리 체계
서울 동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물 등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우선 지정	지역생산물 우선지정 사례
서울 노원구	학교·공공단체·유관기관 등에 우선구매 요청 및 생산시설과의 연계 지원	시청·산하기관 외 공공기관으로 협력 확대 가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 매년 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제품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구매기관에 제공	세종 내에서도 이미 계획수립·정보제공 방식의 적극적 구매촉진 체계 운영
세종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홍보 및 장애인 고용기업 생산품 구매 지원	지역생산물 구매를 장애인고용정책으로 연결하는 근거
세종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장애인생산물 구매촉진 및 대상물품 지정 등	지역생산물 우선확인 및 고용정책 연계조항 보완 필요

서울특별시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타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세종지역 생산품의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구매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를 지역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정책과 연계하여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도 2025년부터 별도의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물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연도별 구매촉진계획 수립 및 제품정보 제공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세종시 본청과 산하기관에도 보다 적극적인 구매촉진 체계를 마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음.